

- 가.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
 - 나. 도로 · 철도 · 궤도 · 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
 - 다. 전기 · 가스 · 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
 - 라.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
 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10. "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"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11. "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"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삭제 <2010. 2. 4.>

-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·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<신설 2020. 6. 9.>

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

제4조(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·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2. 4., 2013. 3. 23.>

-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단위물류시설 :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
 2. 집적[클러스터(cluster)]물류시설 :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
 3. 연계물류시설 :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
-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 6. 22.>
1.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
 2.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
 3. 물류시설의 지정 · 개발에 관한 사항
 4. 물류시설의 지역별 · 규모별 ·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 5.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
 6. 물류시설의 공동화 · 집단화에 관한 사항
 7.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
 8.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· 관리에 관한 사항
 9.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(郊外移轉)에 관한 사항
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5조(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. 28.>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